

#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12월 29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12 . 26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12. 26
- 다. 상정일자 : 제8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제2차조례특위(2000.12.29)  
상정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신만희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과 생활보호 폐지로 동조례의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로 명칭변경

### 나. 주 요 골 자

- 동조례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“로 명칭변경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생활보호법 폐지와 동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

발견되지 않았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
10부

##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1호 및 제2호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 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